# 2022. 1학기 대면수업 관련 Q&A





# 교수자가 확진되었습니다. 처리 절차와 수업 진행이 궁금합니다.

A	□ 교수자 확진 시 즉각 학과 및 행정실, 본부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 ※ 교수자 본인 → 학과 → 단과대학행정실 → 본부(총무과, 학사지원과) 담당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
	□ 무증상, 경증인 경우 검사일로부터 7일(3일 연장 가능)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 가능합니다. (수업이 어려운 경우 병가 신청 후, 결·보강 처리)
	□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격리해제일 이후에도 대면수업 전환이 어려운 경우, 병가 신청 후 결·보강 처리, 장기간 수업 운영 불가시 대체 교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.
	□ 학생들에게는 블랙보드로 비대면 수업 전환 및 수업 기간을 안내하고 문자로도 발송하여 학생들의 혼돈이 없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학생이 확진되었습니다. 처리 절차와 수업 진행이 궁금합니다.

□ 등교를 중단하고 학과 사무실 및 결석하게 되는 수업의 교수자에게 연락 후
공결처리 하도록 합니다. (5, 6번 항목 참고)
※학생본인→학과 및 수강과목교수 → 단과대학행정실 → 본부(총무과, 학사지원과) 담당자에게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

Q. 3

# 의심증상(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손실)이 있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요?

□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,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 가능합니다.
A 양성인 경우 즉시 PCR검사를 실시하며, 검사일부터 결과 통보시까지는 공결처리가 가능합니다. (5, 6번 항목 참조)



##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,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?

	□ 수업 도중 증상 발현 시(동거가족의 확진 사실 인지시) → 학과 및 행정실로 연락하여 → 각 대학별로 마련된 임시 격리 공간으로 즉시 이동한 후 → 학과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.
Α	□ 음성인 경우는 수업에 재참여합니다.
	□ 양성인 경우 학생은 즉시 귀가 및 PCR 검사를 실시( 5, 6번 항목 참조)하고, 학과와 행정실은 환기 후 강의실 소독 후 수업을 재개합니다.
	□ 교수자는 검사 등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이 학습 결손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


## 코로나 관련 공결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.

Α

□ 코로나 관련 공결 신청을 할 경우,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교수자에게 대면 수업 불참 및 사유를 알리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전 또는 사후(7일 이내) 개신누리에서 공결 신청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※ 코로나 관련 공결 처리가 간소화되어 공결 신청 강좌 내역이 공문으로 송부되지 않으므로 담당 과목 교수자는 개신누리 공결 승인 내역을 수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
## 사례별 공결 가능 사유 및 개신누리 공결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

## (사례1) PCR검사 후 결과 대기 중의 결석

#### (항목선택) PCR 검사 – PCR검사 결과 증빙

(사유1)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

(사유2) 동거인이 확진되어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

(공결기간) PCR 검사(검체채취)일 ~ 결과 통보 시까지

(증빙서류) 음성확인서(보건소에서는 발급하지 않음), 본인의 이름과 검사일, 최종 결과일 등이 표기된 문서 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자 캡처본

## (사례2) 코로나19 확진되어 결석

#### (항목선택) 코로나확진으로인한자가격리

(사유) PCR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※ 방역대책본부지침에 따른 기간 내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결과도 인정

(공결기간) PCR 검사(검체채취)일로부터 7일까지 ※ 7일차 24시 격리해제

(증빙서류) 본인의 이름과 검사일, 양성 확인 결과 등이 표기된 문서 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자 캡처본

※ 다만 7일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공결 신청 가능 (1) 위중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 (사유: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)

(2) 추가적으로확진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내역을 첨부하여 공결신청(사유: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)



## 사례별 공결 가능 사유 및 개신누리 공결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

### 코로나 관련 기타 사례 인정 여부

#### (사례1)PCR 검사 대상자, (사례2)확진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공결 신청 불허

예)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검사키트 사용으로 인해 수업 결석 → 공결 불인정

#### (참고)
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"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, 예방접종 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" ('22.2.25.)
- 교육부"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"('22.2.28.)

### (사례3) 기타 사례

## (항목선택) 코로나 관련 항목이 아니라 '진단서 또는 진료확인

**서를첨부한질병'항목으로신청기능한경우** ※학과장날인을받은 공결승인신청서첨부필요

(사유1) 신속항원검사 실시로 인한 결석

(공결기간) 검사 당일 검사 소요시간

(증빙서류) 신속항원검사 결과지

※ 음성결과 시 바로 수업 참여, 양성결과 시 즉각 PCR검사 실시 대상

(사유2) 신속항원검사, 자가검사키트 등의 결과는 음성이나 의심증상 지속으로 인한 결석 (공결기간) 증빙서류 상 명시된 필요기간

(증빙서류) 진단서,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



##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나요?

	우리 대학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
	□ 1주 기준 전체구성원(재학생, 교직원) 인원 대비 5%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, 대학 본부에서 비상1단계 전환 공지
	- <mark>수강인원 30명 이상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전환</mark> , 해당강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(학사장학) 비대면강의 전환 목록을 참고
Α	- 교원은 블랙보드를 통해 해당 강좌의 대면/비대면 수업을 안내 - 학생들은 블랙보드를 통해 수업별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를 확인
^`	학생들은 클랙포프를 중에 구입을 이에인 구입 선된 이구를 확인
	□ 1주 기준 전체구성원(재학생, 교직원) 인원 대비 10%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, 대학본부에서 비상2단계 전환 공지합니다.
	- <b>모든 강좌가 전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</b> 되는 것이 원칙
	- 다만 일부 실험실습과목 등 수업 운영상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 동의
	및 대학장 승인, 총장(학사지원과) 보고 후 대면수업을 진행 가능

- 교원은 대면수업 운영여부를 안내하고, 학생들은 블랙보드를 통해 전환여부를 확인



# 비상계획단계를 발동할 만큼 학내 확진자는 많지 않지만 특정 강좌, 단과대학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것 같습니다. 비대면 전환할 가능성은 없나요?

	□ 한 강좌 수강생 중 확진자(및 격리자)가 집단 발생(수강인원의 20% 초과 인원)할 경우수업 결손 등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. (사후 보고) ※ 서식1참고
A	□ 비대면수업 운영기간은 비대면 수업 전환일로부터 7일 경과시 해제되어 대면수업으로 복귀해야하나, 교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일 연장(최대 14일)이 가능합니다.
	□ 또한 특정학과나 단과대학의 확진자 및 격리자 수가 재학인원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 가능합니다. 이 경우에는 총장(학사지원과)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 ※ 서식2 참고

Q. 9

## 확진 격리되어 시험일에 대면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.

Α

□ 교수자는 대면 시험 시 확진자에 대한 조치로서 시험대체과제, 비대면 시험, 혹은 추가시험등의 방법을 강좌별로 결정하여 블랙보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합니다.

※ 추가시험의 경우 추가시험 인정원을 제출하고, 성적입력 기간 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※ 학칙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 3항, 학사운영규정 제81조 참고